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3. 9 선고 2022가단5007900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현 담당변호사 임다훈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1. 12.

판 결 선 고 2023. 3. 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,599,000,000원 한도 내에서 837,197,724원 및 그 중 168,123,479원에 대하여 2021. 11. 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09. 3. 31. 주식회사 C(이하 ‘주채무자 회사’라고 한다)에게 1,230,000,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율 및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하기로 약정하였고,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,599,000,000원을 한도로 주채무자 회사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나. 주채무자 회사와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,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21494호로 주채무자 회사와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원리금 채무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, 이에 따라 주채무자 회사와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0. 4. 6.자 지급명령이 주채무자 회사와 피고에 대하여 같은 해 4. 15. 송달된 후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았다.

청구취지 : 주채무자 회사, 피고는 연대하여 1,218,311,327원 및 그 중 1,218,287,586원에 대하여 2009. 10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 단 피고가 지급할 한도는 1,599,000,000원 이내로 한다.』

다. 위 대여금의 2021. 11. 2. 기준 원금 잔액은 168,123,479원, 이자 잔액은 669,074,245원이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2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보증한도 1,599,000,000원 한도 내에서 대여원리금 837,197,724원(= 168,123,479 + 669,074,245) 및 대여원금 168,123,479원에 대하여 2021. 11. 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 12%의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, 위 채권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2010. 4. 6.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위 지급명령은 주채무자 회사와 피고에 대하여 2010. 4. 30.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21. 11. 24.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. 그러나 갑 1,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, 원고는 2020. 3. 2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3685호로 주채무자 회사, 피고 등을 상대로 위 대여원금 잔액 168,123,479원 및 이자 등 625,952,065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, 주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(민법 제440조 참조) 피고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니,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,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시, 원고의 위 신청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3685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본인 겸 주채무자 회사의 청산인 자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48456 사건에 불출석하여 소 취하로 위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주장한다. 살피건대, 민법 제170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상의 청구는 소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이나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3685호 지급명령 신청이 주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, 오히려 갑 1, 3호증에 의하면 위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은 2020. 5. 6. 주채무자 회사에게 송달되었으며 주채무자 회사는 그로부터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같은 해 5. 21. 주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.

3. 결 론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.

판사 박지원